## 《증보문헌비고》(레고)에 반영된 관혼상제례법

김 창 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래가 반영되어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정에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많은 문화적재보들을 창조하여왔다.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례고)는 제54권부터 89권까지 모두 36개의 권으로 수록되여 있는데 여기에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례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이 글에서는 《증보문헌비고》(례고)에 반영된 관혼상제례법과 관련한 자료들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무엇보다먼저 관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관례는 옛날 풍속에 관을 쓰는 의식으로서 사내아이는 15~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였다는 뜻으로 관을 씌우고 자를 지어주었고 녀자아이는 낭자를 틀어주고 비녀를 꽂아주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관습적으로 전해내려오는 관을 씌우는 생활풍습이 있었다.

고대나 삼국시기 관례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례고의 기록에서는 백제에서 《녀자들이 머리를 땋아서 뒤에 드리웠으나 시집가면 머리를 두가닥으로 땋아서 머리우에 틀었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6 례고35)

이러한 풍습은 백제에만 있은것이 아니였고 동족의 나라들인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같았으며 녀자에게만 한한것도 아니였다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삼국시기에도 관례풍습이 있었다고 짐작할수 있다.

례고에 의하면 《고려 광종 16년(965)에 왕세자의 관례를 진행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예종 16년(1121) 정월에 〈수충궁〉에서 왕태자의 관례를 진행하였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78 례고25)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고려초부터 관례가 왕족이나 지배계급들속에서 성행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의종때에 왕태자의 관례의식을 자세히 정하고 태묘와 별묘, 경령전에 아뢰였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72 례고19)

이 기록을 통하여 이미전에 실시하여오던 관을 씌우던 풍습을 의종때에 와서는 법으로 제도화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관례의식은 초가, 재가, 삼가로 구분하였다.

초가는 어른의 평상옷을 입는 례식이고 재가는 어른의 나들이옷을 입는 례식이며 삼가는 어른의 례복을 입는 례식이다. 이것은 생활의 여러 경우에 필요한 평상복, 외출복, 례복을 구분하여 입는것으로서 성인으로 된것을 상징하는 례식이였다. 이러한 관례풍습은 조

선봉건왕조시기까지 오랜 기간 전승되여왔다.

관례는 조선봉건왕조말엽까지도 일정한 계층들속에서 진행되여왔으나 1890년대이후에 들어서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관례를 진행하는 시기, 의식절차, 음식차림의 규모 등은 계급적, 신분적차이, 해당 가정의 가풍과 생활형편에서의 차이, 지방의 관습적차이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해온 혼례풍습을 리해할수 있는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혼인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발전되고 변천되여왔다.

혼례풍습에는 우선 혼례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고상하면서도 정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고대시기부터 사람들은 그 어떤 강요나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들의 결심에 따라 혼인을 맺는 방법으로 서로 결합하였다.

례고에서는 《고구려사람들은 혼인에 앞서 고기와 술을 보낼뿐이다. 재물이 있고 없는 가에는 관계하지 않고 장가드는데 혹 재물을 받는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부 끄럽게 여긴다.》라고 하였으며 《신라에서 남녀가 시집, 장가가는 례식은 오직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뿐인데 그 정도는 가난한가 부유한가에 따랐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고대로부터 세나라시기에 이르기까지 혼례를 고 상하게 진행하였으며 서로의 접촉이 비교적 자유롭고 까다로운 격식이 강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례고에서는 《고려에서는 혼인하는 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 상 하나를 차려놓고 술 석 잔을 돌리는것으로 혼례를 끝냈을뿐이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적타산이나 물질적보상을 전제로 내세우지 않는 아름답고 고상한 풍습은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승되고 변천되여왔다.

혼례풍습에는 또한 성이 같은 사람끼리 혼인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례고에 의하면 예맥에서는 《성이 한가지이면 혼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에서는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의논하는것은 인륜을 어기는것으로서 종친들가운데서 동성끼리 혼인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임금의 지시를 위반하는것으로서 죄를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나라풍속에 성씨는 한가지이지만 향관이 만약 다르면 혼인이 통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금지하였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9례고36)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동성불혼풍습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혼례풍습은 건전하고 진보적인것으로서 후세에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의 고

유한 혼례풍습의 전통으로 되였다.

혼례풍습에는 또한 친영풍습과 반친영풍습이 있었다.

례고에는 처가살이풍습을 없애고 친영풍습을 실시한데 대한 자료가 기록되여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례를 올리고 당일 또는 3일만에 녀자를 직접 맞아 데려오는것을 말한다.

례고에서는 《1513년 처음으로 민간에서 친영하는것을 허용하니 김치운이 친영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16세기 반친영에 대하여 《량반집과 민간에서 혼례가 이전과는 좀 달라져서 사위가 처음에 신부집에 가면 신부가 나와서 교배합근례를 하고 이튿날에는 시부모에게 뵈 옵는다. 이것을 반친영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처가살이혼례풍습이 후세에 와서 친영풍습과 반친영풍습으로 변천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다음으로 제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제례는 해당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문화발전수준에 의하여 그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며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답습하면서 격식화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단군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강화부 마니산꼭대기 참성에 있다고…》라고 하였으며 《고구려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였다.》,《신라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영일현에 있다고 풍속에 전해진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61 례고8)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는 삼국시기이전부터 진행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난날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된자는 사직을 세우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나라의 번 영을 기원하군 하였다.

례고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고국양왕 9년(393)에 나라에 국사를 세웠다.》라고 하였으며 신라에서는 《선덕왕 4년(636)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55 례고2)

고려시기에도 《성종 10년(991)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다.》라고 하였으며 《의종 때에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자세히 정하였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54 례고1)

이러한 기록들은 삼국시기부터 사직을 세웠으며 제사를 지내왔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태조 3년(1395)에 사직단을 세워 음력 2월과 음력 8월 첫 술일과 람일에 제사를 지내였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54 례고1)

사람들은 혈연관계, 인연관계로 하여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해하고 나가서 그를 잃은 슬픔과 그의 명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죽은 사람의 위패를 사당에 배향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였다.

례고에는 삼국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는 긴 력사적기간 종묘에 제사를 지낸 사실들이 기록되여있어 지난날 제사례법을 리해할수 있게 한다.

례고에 기록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종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것은 삼국시기 부터였다고 볼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대무신왕 3년(21)에 시조 동명왕 사당을 세웠다.》라고 하였으며 신라에서는 《남해차차웅 3년(기원전후한 시기)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왕 사당을 세워 거기에 제사를 지내였다.》라고 하였으며 백제에서는 《온조왕 원년에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55 례고2)

례고에는 종묘와 관련한 제사례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우제 로부터 여러 제사들을 지내온 기록들이 적지 않다.

례고에 반영된 례법자료들에는 시대적 및 력사적,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왕을 비롯한

통치계급의 생활을 위주로 서술하고 근로인민들속에서 널리 진행하여온 민족생활풍습은 매우 소략하게 서술한 부족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허황하고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 내용들도 서술되여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여온 관 혼상제례법이 수록되여있어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